

##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하여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신설(안 제7조의2)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건축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2849(2022.10.6.)호]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지역활력과-5125(2022.10.7.)호]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022.10.20.~2022.11.9.)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u></p> <p>① <u>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u>1. 버스정류장</u></li><li><u>2. 횡단보도</u></li><li><u>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u></li></ol> <p>② <u>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u></p> <p>③ <u>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u></p>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  
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허가과 지방시설주사 배효정